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구 벤처기업인의 열망인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가 신속 완공되면 입주 대상과 시설지원 및 운영지원 등 벤처기업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 자격 요건 및 모집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자금 지원 및 행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련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임대료, 공공요금 등 입주자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창업보육센터의 공동 운영 및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 9, 10조)
- 바. 창업보육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창업보육센터 운영 수탁자가 협약 등을 위반하였을 시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3. 검토의견

본 조례는 우리구 문래동 3가 54번지 66호 외 1에 건립하고 있는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과 장소확보 곤란, 경영능력 미흡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입주대상 벤처기업의 선정, 입주자의 부담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동운영, 운영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운영 또는 위탁운영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과 운영 경험의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제정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사항으로 아래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안 제4조제1항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신청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시행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를

“구청장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신청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벤처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 로 하여

의미 전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의 명확을 기하고 문자절약 등 실익을 위하여 수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부칙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를 신설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11. 3

보고자 : 김 완 섭

- 붙임 : 1. 관련법령
2. 자치구 별 창업지원센터 현황
3. 자치구 별 창업지원센터 운영 기준

<수정의견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p>제4조(입주대상 등) ①창업보육센터의 입주신청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시행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4조(입주대상 등) ①구청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신청일 현재 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망 벤처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부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신설)</p>	<p>(부칙)</p> <p>①(시행일)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p>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135조(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0조(업무기준의 고시)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2.8.26>

②이 법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 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8.26>

③삭제 <2006.3.3>

④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8.26>

⑤이 법에서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1998.12.30, 2002.12.30, 2006.3.3>

⑥이 법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함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0.1.21>

⑦이 법에서 "전략적제휴"라 함은 벤처기업이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0>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7.29, 2006.3.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6.3.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3)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3>

[본조신설 2002.8.26]